

# 외국 진실위원회 보고서 권고사례 및 관련자료

2002. 5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보고서팀

외국 진실위원회 보고서 권고사례 및 관련자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보고서팀

전회

## 외국 진실위원회 보고서 권고 사례

### 1. 칠레와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 보고 및 평가

마크 엔살라코(Mark Ensalaco)

Truth Commission for Chile and El Salvador

A Report and Assessment

### 2.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 위원회 보고서 권고사항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inal Report

Vol. 5 Chapter 8, Recommendations

### 3.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 권고사항

Truth Commissions: Reports: El Salvador

Chapter V. Recommendation

### 4. 과테말라 '역사적 진실규명위원회' 권고사항

Guatemala Memory of Silence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Historical Clarificati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Truth Commission for Chile and El Salvador**  
**A Report and Assessment**

**칠레와 엘 살바도르 진실위원회  
보고서 및 평가**

마크 엔살라코(Mark Ensalaco)

**목 차**

1. 서문 .....	1
2. 위임사항: 진실위원회였던 것과 아니었던 것 .....	2
3. 인권에 대한 기여.....	6
정의라는 대의(大義) 인권보호와 증진	
4. 진실위원회의 규범적 기초.....	11
5. 결론 .....	14

**1. 서문**

아메리카에서는 칠레와 엘 살바도르가 가장 최근에 진실위원회를 실험했다. 칠레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살바도르의 '진실위원회'는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 속에서, 수십 년 동안의 정치폭력에 대한 진실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할 개혁을 권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었다. 이들 두 나라에서 발생한 인권재앙이 아메리카의 인권상황을 거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 두 진실위원회의 활동을 재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칠레와 살바도르의 경험이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대한 인권과업으로 간주되는 과업, 즉 정의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적인 감독하에 진실을 찾아내는 과업을 실행하려는 진실위원회의 개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걸맞는 작업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칠레와 살바도르의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최근에 설치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하는 역할의 일부로 진실위원회를 통상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한다.<sup>1)</sup> 첫째, 나는 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검토하고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창설된 칠레의 '진실과 화

해위원회'와 살바도르의 '진실위원회'가 드러내는 중요한 차이점이 그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 지적한다—실제로는 두 위원회가 별개이지만 다 같이 유용한 진실위원회의 모델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두 진실위원회가 조사 및 권고기능을 통해 기여한 바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人道法) 속에서 미래의 진실위원회를 위한 규범적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2. 위임사항: 진실위원회였던 것과 아니었던 것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진실위원회'는 현저히 다른 정치적 환경 속에서 설치되었다. 그래서 이들 환경이 위원회의 위임사항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위원회가 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이지 '진실과 화해와 정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칠레의 아일윈(Patricio Aylwin) 대통령은 1990년에 권력을 잡은 후 한 달만에, 1973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피노체트 정권의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칠레 사회의 아우성에 호응하여 대통령령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 (혹은 '레티그<Rettig>위원회')를 설치했다.<sup>1)</sup> 피노체트 장군이 자신이 만든 헌법 규정에 따라 일단 옆으로 비켜나면서 민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한은 "안전을 보장한" 과도기 ("pacted" transition)라는 정치적 현실 때문에 제한되었다.<sup>2)</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살바도르의 진실위원회 (이하 진실위원회)는 유엔이 주선한 협상으로 12년 내전이 해결된 결과로 탄생되었다.<sup>3)</sup> 진실위원회의 창설은 분쟁 중에 대대적으로 자행된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들을 조사할 위원회가 전장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교전 당사자들과 강력한 외부세력의 인식을 반영했다. 그래서 두 위원회는 중요한 조사 및 권고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비슷하게 위임받았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들이 있다. 나는 먼저 비슷한 점들을 거론한

1) 이 논문을 쓰기 위해 칠레에서는 1991년 가을과 1993년 여름에, 엘 살바도르와 코스타 리카에서는 1993년 봄에 양 위원회의 법무요원들을 비롯하여 인권단체, 가톨릭교회의 인권사무국, 정당 및 Farabundo Marti 민족해방전선 (FMLN) 대표들과 인터뷰를 했다. 또 1994년 여름에는 산디아고에서 레티그 위원회 위원들과도 인터뷰했다.

2) 이 위원회를 Raul Rettig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보통 레티그 위원회라고 했다. 앞으로 나는 이 위원회를 엘 살바도르의 진실위원회와 구별짓기 위해 레티그 위원회라고 부르겠다. 레티그 위원회는 1990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1991년 초에 두 권의 두꺼운 책으로 된 850 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내놓았다. 진실위원회는 1992년 7월 13일에 활동을 시작하여 1993년 3월 29일에 252 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3) 1988년 9월 피노체트 장군은 군사 헌법에 의해 자신의 계속 집권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패배했다. 이듬해에 아일윈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피노체트 장군은 군 참모총장직을 유지했다. 그 자리는 칠레헌법이 그에게 보장한 자리였다. 그리고 군의 특권들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4) 1990년 4월과 1992년 1월 사이에 엘 살바도르 정부와 FMLN은 협상을 통해 일련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유엔이 '엘 살바도르 협정: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공표했다 (DPI/1208, 1992년 5월).

후, 다른 점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레티그위원회'를 창설하는 대통령령의 서문에서 대통령은 "오직 진실이란 기초 위에서만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진정한 국민적 화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밝혀내는 일을 돋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긴다고 언급했다.<sup>5)</sup>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레티그위원회'에 네 가지 과제를 주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의 실상을 될 수 있는 대로 완벽하게 밝혀내고, "희생자들의 이름과 운명과 행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증거를 수집"하며,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보상을 건의하고, 그와 같은 침해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었다.<sup>6)</sup>

진실위원회와 그 권한의 이론적 근거는 평화협정에 있었다.<sup>7)</sup> 진실위원회에 관한 멕시코 협정의 서문에는 평화협상 당사자들이 인정한 것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 특징과 충격, 그것이 야기한 사회적 불안 때문에 완벽한 진실을 밝혀주기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폭력행위들을 지체 없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1980년 이후 발생한 심각한 폭력행위들"을 조사하고 그 조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조치들을 권고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8)</sup>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위원회에도 기소권이나 사법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두 위원회가 다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느 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엄격한 법적인 의미에서 유죄 혹은 무죄임을 결정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아일윈 대통령령은 법원만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애써 명시하면서, 위원회가 "자행된 범죄"에 특정 개인이 연루되었음을 밝혀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물을 모두 해당 법원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이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 그래서 군인이나 공안부 대원들이 특정 행위에 관련되었음을 밝혀내고도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기를 자제하기까지 했다. 일부 위원들과 법무요원들은 그러한 자체가 무엇보다도 진실을 아는 것이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내용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9)</sup> 위원

5)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5-6.

6) 同上 6-7.

7) 진실위원회를 위한 규정은 1991년 4월의 멕시코 협정에 들어있고, 1992년 1월 멕시코 차풀테펙에서 조인된 최종적인 포괄적 평화협정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광란에서 회망에로: 엘 살바도르 12년 전쟁, 진실위원회 보고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 Doc. S/25500, 189 (1993) 참조.

8) 同上 189.

9)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의 보고서, 上記 각주 5, 5. 레티그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호세 살라케트는 "진실은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 즉 자행된 폭력의 성격과 범위는 물론 그 폭력이 어떻게 계획되고 집행되었으며, 희생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고, 누가 명령을 하여 누가 실행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글을 썼다. Jose Zalaquett, '전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정치적 제약' Persona y Sociedad 56 (1993). 한 법무요원은 위원회가 특정 개인들에 관한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대한 군의 공식적인 반응은 레티그 위원회가 법원에 유보된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Respuestas de las Fuerzas

회가 “사법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엘 살바도르 검찰총장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sup>10)</sup> 두 나라에서 똑같이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법원에 넘겨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두 위원회는 다같이 자기 나라의 사법제도가 결함이 있거나 은폐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사면법이 기소를 가로막고 있었다.<sup>11)</sup>

두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및 보고서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레티그위원회는 심각한 폭력행위들에 대한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고 구금되어 실종된 상황을 밝혀내라는 위임사항 때문에 많은 조사를 광범위하게 했다. 반면에 진실위원회는 실종자를 찾고 확인하는 작업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레티그위원회는 (구금되어 실종된 957건을 포함하여) 대략 3,400건을 조사하여 그 중 641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티그위원회의 조사는 포괄적인 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위원회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들만을 조사했다. 그 결과 수만 건에 이르는 고문과 강제 추방 및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그렇게 된 것을 나중에慨叹했다.<sup>12)</sup>

살바도르의 12년 내전 중에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진실위원회는 1980년 이후에 발생한 “심각한 폭력행위”, “살바도르 사회를 격분시키고 국제여론을 들끓게 했거나”, “조직적인 형태의 폭력 혹은 학대로 드러난” 행위들을 조사하는 일에 주력했다.<sup>13)</sup> 그 결과, 위원회는 22,000여 건이 주목을 받았지만 상징적인 사건 33건에 관한 조사결과만 보고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조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시 대두되던 암살단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인권운동가들과 FMLN 요원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sup>14)</sup>

둘째, 레티그위원회의 권고기능은 진실위원회의 권고기능보다 더 활발했다. 레티그위원회는 적절한 개혁정책을 연구하여 제안하도록 하기 위해 창설된 유일한 공식 기구였다.<sup>15)</sup> 진실

위원회는 평화협정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혁명적인 개혁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로서 개혁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진실위원회는 몇 가지 추가적인 개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볼 때 평화협정에 의해 이미 마련된 모든 개혁정책을 즉각 실행할 것만을 권고했다.

셋째, 진실위원회는 유엔의 후원으로 설치되었다.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바도르인이 아닌 외국의 고위인사 세 사람을 진실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보도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고려하여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한다.<sup>16)</sup> 레티그위원회는 초국가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없었으므로, 칠레 군부와 지지자들이 위원회를 승리감에 도취된 정치적 제휴의 산물이라고 무시하기가 더 쉬웠다.<sup>17)</sup>

넷째, 진실위원회는 살바도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공동노력의 일부가 되는 구실을 하며 한몫을 했다. 실제로, 평화협정에 의해 창설된 다른 기구들, 즉 유엔 평화유지단 (ONUSAL), 전국 평화정착 위원회 (COPAZ), 전국 인권보호 위원회, 특히 특별위원회 등과 진실위원회 사이에 상승작용이 일어났다. 이 모든 기구들이 살바도르 사회와 정치제도를 바꾸고 감시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다.<sup>18)</sup> 레티그위원회는 실종자 수색작업을 계속할 ‘보상 및 화해를 위한 공사(公社)’를 설립할 것과 미래의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할 인권 민원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레티그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다섯째, 멕시코 협정에는 엘 살바도르 정부와 FMLN이 위원회에 협력하고 그 권고사항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진실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분명히 의무적인 것이다.<sup>19)</sup> 칠레 군부는 권력을 이양하기 전에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명백히 동의한 적이 없었다. 군부는 위원회를 설치한 대통령에게 헌법상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협력했다. 분명히, 어느 나라에서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유엔이 엘 살바도르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4년 3월에 당선된) 엘 살바도르의 다음 대통령은 칠레의 새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 Armadas y de Orden 참조.

- 10) ‘광기에서 희망으로’ 上記 각주 7, 190.
- 11) 1978년 칠레에서 발동된 사면령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은 허용하면서도 형사 소송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엘 살바도르에서는 1987년에 사면령이 내려졌고 1993년에 진실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다시 내려졌다.
- 12) 법무장관 Rosemarie Bordard와의 인터뷰, Vicaria de Solidaridad, Santiago (1991, 11, 21). 국제 사면위원회는 위원회에 가해진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칠레의 민주정부는 “고문사건을 비롯하여 전 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공표하며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영원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13) ‘광기에서 희망으로’ 上記 각주 7, 19.
- 14) 산 살바도르 대교구의 소송 구조(救助)사무국장 마리아 줄리아 헤르난데스와의 인터뷰 (1993, 5, 6). Gene Palumbo, “Salvadorans Worry Peace Process is on the Verge of Unraveling”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1993, 11, 25.
- 15) 피노체트에 반대하던 민주세력은 1980년에 발효된 헌법을 개정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아일린 대통령이 당선되고 레티그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도 수많은 개혁조치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위원회가 추가적인 개혁을 권고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물러나는 독재정권과 야당의 협상에 포함된 것이었다.

16) ‘광기에서 희망으로’, 上記 각주 7, 12. 위원들은 전 콜롬비아 대통령 Belisario Betancur, 전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Reinaldo Figueredo, 전 남북 아메리카 인권재판소장 Thomas Buergenthal이었다.

17) Boutros-Ghali 유엔 사무총장은 칠레 육군이 레티그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과 공평성을 문제삼아 비난했었고 해군은 보고서를 보고 “공유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Respuesta de la Fuerzas Armadas y de Orden, 上記 각주 9, 451과 458 참조.

18) 멕시코 협정(1991, 4, 27)도 “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감시할” 국가 인권검사를 탄생시켰다. 최종 평화협정(1992, 1, 16. 멕시코)에서는 그 검사에게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무장집단을 확인하여 뿌리뽑을” 임무를 주었다. 감독 책임은 ONUSAL에게 맡김으로써 결국 검사가 ONUSAL의 인권부문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 뉴욕 협정(1991, 9)은 “협상의 결과로 생긴 변화의 과정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통제할 기구로” 전국 평화정착 위원회 (COPAZ)를 탄생시켰다. 같은 협정에 의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 때문에 해임되는 군 장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업저버 1명을 임명할 수 있었다.

19) 광기에서 희망으로, 上記 각주 7, 191.

수단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실위원회는 “특히 인권존중이 위협받은 사건의 경우에 군 장교들에게 형벌을 면하게 하려는 정후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내고 막아낼”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가장 명백하게 다른 점이었다.<sup>20)</sup> 협상과정에 면책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고, 최종 협정서에 정부와 반군이 이 문제를 “영향을 받지 않고 처리”할 필요성을 인정했음을 자세히 언급했다. 칠레 대통령은 자신이 칠레 군부와 관련되어 있는 취약한 입장 때문에, 레티그위원회의 위임사항에 그와 같은 적대적인 조항을 넣지 않았다. 실제로, 레티그위원회는 겁을 먹은 듯이 신중했다. 위원회는 1973년 9월 11일의 무력사용과 그 후 즉시 합법화된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자제하고, “칠레 역사에서 군과 공안부대가 한 중요한 역할”을 찬양하며, “이러한 체제를 훼손시키거나 군이 국가에 바친 기여를 평가절하하고 군이 소명 받은 미래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인권문제를 이용하는 것을 경고한다”고 보고했다.<sup>21)</sup>

면책이 없도록 하라는 위임사항에 따라, 진실위원회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조사보다 고발하는 위원회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위원회의 특별고문 중 한 사람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거명된 사람이 특별한 행위를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만 해석해야지 엄격한 법률적 의미에서 유죄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피고에게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유죄 선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sup>22)</sup>

### 3. 인권을 위한 기여

레티그위원회와 진실위원회는 칠레와 엘 살바도르의 민주적 과도기에 비슷한 기구들이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의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기소권이나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그런 성과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 정의라는 대의(大義)

사실, 위원회는 많은 측면에서 정의를 위해 기여했다. 위원회가 구금자들과 실종자들의 상황을 밝히려했던 칠레에서는 레티그위원회의 보고서가 가족들에게 무서운 법적 행정적 립보(譯註: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한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다. 실종자가 인권침해 행위에 희생되어 죽었다는 위원회의 진상규명은 그 사람

20) 同上 192.

21)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의 보고서. 上記 각주 5, 29, 34.

22)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그 사람이 정당방위를 했거나 당시에 정신이 이상했다는 변론을 막는 것이 아니다. 필자와 진실위원회의 특별 법률고문 Douglass Cassell, Jr.와의 인터뷰. (1993, 11, 4).

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이라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재산권과 유산상속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사회보장 및 다른 혜택 (위원회가 보상하라고 권고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배우자의 결혼상태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 것은 1978년의 사면에 의해 형사소송의 길은 막혔지만 민사소송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sup>23)</sup>

그리고 진실위원회가 적절히 표현한 바와 같이 정의는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 위원회는 보상문제도 강력히 권고했다.<sup>24)</sup> 두 위원회는 물질적 보상은 물론 상징적 보상 (기념비 건조나 공원조성 혹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공휴일 지정과 국민적 화해의 상징물 설치)도 제안했다. 레티그위원회는 특히 사회보장, 건강, 교육, 주택공급의 혜택과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 의료대책 등이 포함된 일련의 창의적인 조치들을 권고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는 데 연루된 사람들을 위한 정신건강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이었다.<sup>25)</sup> 살바도르의 진실위원회는 물질적인 보상문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권한을 가진 자치기구”를 창설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FMLN에게도 특별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보상을 해주도록 지시했다.<sup>26)</sup>

두 나라의 처벌 조치는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해임하거나 개인의 명성과 위신에 손상을 주는 정도였다. 진실위원회는 보고서에 특별히 거명되거나 특별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군 장교들과 공직자 및 판사들을 해임하도록 권고했다.<sup>27)</sup> 게다가 위원회는 해임되는 모든 군인들과 공무원들, 이미 면직되었거나 은퇴한 사람들은 10년 정도 공직을 맡을 자격을 박탈하고, 공안과 국방에 관련되는 자리를 영원히 차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FMLN의 전 고위인사들에게도 적용했다.<sup>28)</sup> 같은 맥락에서, 진실위원회는 “사법부가 아직도 극복해야 할 상황에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의 관행이 가까운 장래에 바뀔 기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고법원의 현직 판사들이 사임하여 새로운 세대의 판사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sup>29)</sup>

군의 고급장교들이 심각한 권리남용에 연루된 것이 폭로됨으로써, 크리스티아니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불리한 국제적인 압력이 조성되어 장교들을 숙청하라는 특별위원회의 비밀 권고사항을 실행하도록 재촉했던 것 같다.<sup>30)</sup> 유감스럽게도 레티그위원회는 이 문제를 완전히

23) 국제사면위원회 참조. 上記 각주 12.

24) 광기에서 희망에로, 上記 각주 7, 185-86.

25) 칠레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42, 846.

26) 광기에서 희망에로, 上記 각주 7, 186. 진실위원회는 엘 살바도르에 제공하는 외국 원조 중 최소한 1%를 보상비로 따로 제쳐두라고 지시했다.

27) 同上 176.

28) 진실위원회는 입법권이 없으므로 COPAZ에 이 권고를 입법조치 하도록 지시했다.

29) 광기에서 희망에로, 上記 각주 7, 178. 최고법원장이 공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엘 살바도르 헌법과 국제조약 및 발효증인 법률에 의해 정해진 질서를 뒤엎고 있다고 규탄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30) 크리스티아니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원조를 보류하겠다는 위협이 있은 후 1993년 7월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David Scott Clark가 쓴 ‘살바도르의 군 고급장교 숙청이 군벌을 해체하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1993년 7월 6일자 3면 참조.

회피했다. 이 위원회는 많은 법률가들이 촉구한 바와 같이 칠레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고위 군사 고문관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지지하지도 않았다.<sup>31)</sup>

유죄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해임되더라도 개인의 명성과 위신에 주는 타격은 상당했다. 보고서는 칠레와 살바도르 국가와 그 제도를 고발할 길을 열어놓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 예수회 회원 6명과 가정부 및 그 딸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재판처럼, 살바도르 암살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만 나돌았던 사람들을 확인하는 전례 없는 행위는 면책의 벽에 또 하나의 구멍을 뚫었다.<sup>32)</sup> 한편으로 보면, 진실위원회는 정의의 길—진실을 밝히되 처벌은 하지 않는 길로 한 발짝 다가섰다.<sup>33)</sup>

현재로서는 장교 해임을 미미하게라도 할 수 없는 칠레에서는 보고서가 군대로 하여금 군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사건으로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레티그 보고서에 대한 칠레의 군부대들과 국립경찰들의 공식 반응은, 17년 독재기간 동안 내전 상태가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법회의에서 내린 사형선고는 불법이라는 레티그위원회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상당히 길게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은 위원회의 고발에 일격을 가하지도 못했고 반증은 더욱 들지 못했다. 내전 상태가 존재했더라도 칠레 군의 모든 행동은 사실상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sup>34)</sup> 레티그 보고서의 발간과 배포는 독재의 “공식 역사”가 범죄자들의 산물이 아니라 진실위원회의 산물임을 분명히 말해 주었다.

### 인권보호와 증진

이들 최근의 위원회가 구성된 방식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난 권고 기능 때문이었다. 국제 인권기준을 반영하는 헌법과 법률규정, 사법부와 군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한 이들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은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회의 법적 제도적 전제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 위원회는 두 나라가 아직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든 국제인권조약을 인준하고, 과거에 인준했던 조약에 붙어있는 모든 유보조항들을 철저히 재검토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했다. 두 나라를 국제적인 인권보호와 증진 체제에 정착시키기 위해, 두 위원회는 칠레와 엘 살바도르에게 남북 아메리카 인권법원의 권한을 인정할 것을 특별히 요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레티그위원회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남북 아메리카 인권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그 법원의 자문 의견에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sup>35)</sup>

31) 칠레 헌법 93조는 대통령이 군 참모총장과 군사령관들을 해임시키는 것을 거의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적들이 개정하려고 애를 썼던 피노체트 헌법의 한 조항이었다. 레티그 위원회는 민원조사관직을 신설하는 조항과 헌법상 비상사태에 행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야당 법률가들이 제안한 많은 헌법개정안을 지지했지만, 이 조항은 명백하게 지지하지 않았다.

32) ‘면책의 틈: 엘 살바도르의 예수회 회원 살해사건 재판’ 참조

33) 上記 각주 22, 69.

34)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99.

35)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58. ‘광기에서 희망으로’ 上記 각

레티그위원회는 특히 인권과 관련되는 헌법 및 법률 규정들을 재검토하는 매우 값진 일을 했다. 그리고 국제 인권법에 따르는 의무와 상반되는 것 같은 헌법 규정이나 법령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헌정의 비상사태에 인권보장을 정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미 개정된 헌법 조항을 재검토하여, 그 조항이 미주 인권협약 27조와 완전히 양립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sup>36)</sup>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전시 재판소가 사전에 법적인 절차 없이 혐의자들에 대한 처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군사법원에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최고법원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sup>37)</sup>

전반적인 헌법개정 문제는 살바도르의 평화협정에 윤곽이 잡혀 있었다.<sup>38)</sup> 그러나 진실위원회는 엘 살바도르가 지켜야 할 인권협약을 반영한 헌법 규정의 효력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sup>39)</sup> 그리고 위원회는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헌법 및 법적인 문제들을 추가로 찾아낼 수 있었다.

각 위원회는 헌법적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구제책(amparo)과 인신(人身)보호영장(habeas corpus)제도, 정당한 절차, 형사소송법, 억류처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쳐야 할 여러 가지 결함들을 확인했다. 그 중 한가지 과제는 구금하는 것이 구속자의 권리를 손상시킬 시급한 상황에서, 하급법원이 amparo와 인신보호영장 등 특별 구제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하여 비상사태에도 여전히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과제는 법정 밖에서 한 자백과 관련되는 것으로, 위원회는 그런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하거나 나중에 혐의자가 진술을 철회하면 소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sup>40)</sup> 레티그위원회는 비밀리에 기소함으로써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과 혐의자를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변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구금하는 일상적인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했다. 레티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라고 재촉하면서, 수인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정부 관리들을 해임하거나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진실위원회는 행정처리의 장기 지연문제를 거론하면서 치안판사가 아니라 행정관리들이 자유 박탈을 비롯한 처벌을 부과하는 권한에 대해 언급했다. 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들어갈 때부터 혐의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을 성심껏 존중하며, 구금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행정관리들의 억류 명령권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sup>41)</sup>

제도개혁 문제는 두 위원회의 보고서에 눈에 띄게 기술되어 있다. 두 위원회는 판사들의 자질과 사법부의 독립 및 군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 레티그위원회는 칠레의 다음 세대 판사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 침해 행위를 막는 데 필요한

주 7, 183-84.

36)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57.

37)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57.

38) 同上 863.

39) 광기에서 희망으로, 上記 각주 7, 183.

40)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65. 광기에서 희망으로, 上記 각주 7, 181. 법정 밖에서 하는 자백은 경찰서에서 심문 받을 때 한 진술이다. 경찰은 자백을 끌어내려고 종종 강압수단을 썼다.

41) 광기에서 희망으로, 上記 각주 7, 183.

의지와 도덕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법학대학에서 인권강좌(catedra)를 포함시킬 것과 “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기꺼이 거부하는” 판사와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법학교육을 형식주의적으로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sup>42)</sup> 진실위원회는 평화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사법연수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새로운 법원에 공급할 새롭고 건전한 인재들을 교육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평가에 의하면 사법부에 남아있어서는 안 될 법관들을 대체할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이었다.<sup>43)</sup>

사법부의 독립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위원회는 판사와 검사의 임명절차를 바꾸도록 권고했다. 칠레에서는 권고한 개혁이 대수롭지 않았다. 최고법원이 확인하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들의 수를 늘렸을 뿐이었다. 엘 살바도르에서는 최고법원의 과도한 권한과 특권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진실위원회는 하급법원의 판사 임명을 고등법원이 아니라 신설된 전국 법관회의에서 하도록 (책임지도록) 권고했다.

판사들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티그위원회는 법관 자격의 명백한 기준을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일 경우 판사들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sup>44)</sup> 진실위원회는 하급법원의 판사들에게 예산문제를 관리할 권한을 더 많이 주고, 판사 수를 늘릴 것과 부패를 막기 위해 봉급을 올려줄 것을 권고했다.

칠레와 살바도르의 군에 관해서는 각 보고서의 논조와 권고사항의 내용이 ‘협정한 과도기’와 ‘협상한 혁명’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다. 진실위원회의 과업은 분명히 살바도르 사회의 군국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레티그위원회는 군과 공안부대에게 임무 수행 중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sup>45)</sup>

또한 두 위원회는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레티그위원회는 이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말로 표현했다. “모든 군인은 각자가 인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각자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sup>46)</sup> 각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거의 똑같다. 둘 다 민간인 고문들이 가르치는 인권과정을 사관학교 교과과정과 참모과정 및 모든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레티그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 사용되는 교재들을 국제 인권단체들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강력히 제안했다. 진실위원회는 미국이 지원하는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외국을 따라갈 장교들을 위한 선진 교육 과정을 선택할 때에는 그 과정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존중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확인해 보아야 한다”<sup>47)</sup>고 지적했다.

군의 사명에 대한 재교육, 정보기관의 역할, 군과 경찰의 구조조정에 관한 두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은 사정이 다른데도 매우 비슷하고 이치에 맞다—모두가 군인들을 민간의 권리에 철저히 복종케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칠레의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당시의 지배적인 형

42)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59, 860.

43) 광기에서 희망에로, 上記 각주 7, 182.

44)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62.

45) 同上 869.

46) 同上 870.

47) 광기에서 희망에로, 上記 각주 7, 180.

태였던 민군(民軍)관계나 혹은 군의 국가안보주의를 감히 분석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을 바꾸려 한 적은 더욱 없었다. 엘 살바도르에서는 내전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목할 것은 두 위원회가 다같이 이른바 절대복종의 원칙, 즉 군인들이 내용에 상관없이 명령에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레티그위원회는 신중했다. 이 위원회는 “이 원칙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도외시하지 않고, 이 원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원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sup>48)</sup> 진실위원회는 이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군법 조항을 철폐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받는 하급자들의 입장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들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단순하고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sup>49)</sup>

살바도르 사회를 군정에서 민정으로 바꿀 역사적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진실위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레티그위원회보다 더 앞서 나갔다. 진실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한 장교들에 대한 엄격한 해임제도 도입과 그들이 받을 법적인 처벌의 법제화를 권고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에 의해 창설된 군 명예위원회(Armed Forces Honor Commission)가 현역과 퇴역군인 및 암살단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혼적을 근절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sup>50)</sup> 마지막으로 진실위원회는 “평화협정에 윤곽을 그려놓은 새로운 군대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sup>51)</sup>

결국 두 위원회는 인권 민원조사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레티그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민원조사관 사무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것을 매우 자세히 언급했다. 진실위원회는 평화협정에 의해 이미 설치된 인권보호 전국변호인단 사무국(the Office of the National Counsel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이 지난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무국에는 전국적인 영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예산문제와 정보체계 및 수용소를 시찰하는 문제에 취약점이 있었다. 진실위원회는 검사들과 COPAZ가 살바도르 사회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위원회가 해체된 후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엘 살바도르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달라는 창조적인 제안도 했다.<sup>52)</sup>

#### 4. 진실위원회의 규범적 기초

칠레와 엘 살바도르의 진실위원회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진실위원회가 유용함을 보여주고

48)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71.

49) 광기에서 희망에로, 上記 각주 7, 179.

50) Comision de Honor라 불렀던 이 위원회는 1990년 1월에 전년도 11월에 발생한 예수회 회원 6명 및 고용인 살해 사건 조사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방장관이 서둘러 설치했다. 피소된 장교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본 업저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취하고 사법절차에 아무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명예위원회가 범죄 용의자 9명을 법정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암살단 근절 문제도 인권보호 전국위원회에 맡겨졌다.

51) 광기에서 희망에로, 上記 각주 7, 179-80.

52) 同上 182. 진실위원회 고문 Robert Norris 및 검찰청 사무처장 Luis Fernando Avelar Bermudez와의 인터뷰 (1993, 8)

있다.<sup>53)</sup> 진실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논리에는 상호 작용하는 규범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이 있다. 이 논리는 진실위원회가 그 조사 및 권고 기능을 통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칠레와 살비도르 위원회가 보고한 불안한 현실을 평가의 기초로 삼고 있다. 두 나라에는 “권한 있는 사법, 행정, 입법 당국”이 없었고 국제 인권법이 요구하는 “권한 있는 다른 당국”도 없었다.<sup>54)</sup>

권한 있는 사법, 행정, 입법 당국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은 법치의 필요 조건(*sine qua non*)으로서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 8조는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할 경우 권한 있는 국가 법정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55)</sup> 이 같은 권리에 대한 선언의 기본정신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의 기초가 되고 있다. 국제협약은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하고,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권한 있는 사법, 행정, 입법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들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6)</sup> 미주 인권협약(ACHR)도 엄밀한 의미에서 ICCPR과 일치하고 있다.<sup>57)</sup>

이러한 것들과 기타 수단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되는 것이다.<sup>58)</sup> 진실위원회는 사후에 관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몇 가지만 적용된다. 반면에 몇 가지 규정 (예를 들면 인신보호 영장)은 때맞춰 간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분명히 특별 조사 및 자문기구를 지지하며 레티그위원회와 진실위원회의 활동에 의지한다.

실종자 가족들의 비통한 의문을 어느 정도 풀어주려는 진실위원회의 조사가 지난 규범적 및 법적 근거는 Rodolfo Mattarollo가 가족의 운명에 대한 가족들의 알권리를 명시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1’로 확인해 주었다.<sup>59)</sup> 레티그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할 것과 보고서를 실종자들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삼을 것을 제의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이뤄냈다.

고문 반대 협약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역시 특별조사기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53) 진실위원회의 가치는 진실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 예를 들면 국방장관이 인권침해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공식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니카라과의 경우 같은 곳을 보고 해야될 수도 있다.

54)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5)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56) ICCPR, 上記 각주 54, 2-3조.

57) 1969년 11월 22일에 서명한 미주 인권협약.

58) 권한 있고 독립되고 공평무사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세계 인권선언 10조, ICCPR 14조 1항, ACHR 7조 6, 7, 25항), 인신보호 영장 (ICCPR, ACHR),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즉시 공평무사한 증언을 할 권리 (1984년 12 월 10일에 채택된 고문반대 협약), 불법감금 (ICCPR 9조 5항) 오심(誤審) (ICCPR 14조 6 항, ACHR 10조) 혹은 고문 (고문반대 협약 14조)에 대한 보상 등.

59) 1949년 8월 12일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의한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1.

협약에서는 당사국들에게 진상을 조사한 후 고문 혐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속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sup>60)</sup> 이 협약은 또 진상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sup>61)</sup> 조사결과를 즉각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62)</sup> 게다가 이 협약은 “각 당사국이 고문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어디서나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sup>63)</sup>

그래서 이들 두 협약은 필시 특별한 성격을 지녔을 권한 있는 당국자가 진상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들이 조사결과에 의해 권고사항을 제시할 근거도 있다. 레티그위원회와 진실위원회는 위원회의 공식조사 결과가 어느 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 정의의 문제로서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ICCPR과 ACHR 및 고문반대 협약은 이런 점에서 서로 관련된다.

불법체포 또는 불법감금의 희생자였던 사람은 누구나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ICCPR).<sup>64)</sup>

모든 사람은 오심에 의한 최종판결로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ACHR).<sup>65)</sup>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희생자가 구제를 받아 가능한 한 충분히 재활할 수 있는 수단을 비롯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법적인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고문 결과 희생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의 부양가족에게 보상을 받을 자격을 주어야 한다 (고문반대 협약).<sup>66)</sup>

장기적인 인권재앙에 뒤이은 과도기 중에 민주적인 정부가 어떤 정의로운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될 때는 어떤 특별한 기구만이 이와 같은 구제조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CHR의 독특한 조항은 반론보도를 요구할 권리이다.<sup>67)</sup> 이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는 레티그위원회가 상징적 보상을 권고하는 이론적 근거, 즉 칠레 국가는 “증명된 바 없는 범죄를

60) 고문반대 협약 6조.

61) 同上 6조 2항.

62) 同上 6조 4항.

63) 同上 12조.

64) ICCPR, 上記 각주 54, 9조 5항. ICCPR 14조 6항 참조.

65) ACHR, 上記 각주 54, 10조.

66) 고문반대 협약, 上記 각주 58, 14조.

67) ACHR, 上記 각주 57, 14조. 1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언론매체가 부정확하거나 무례한 진술이나 관념을 일반대중에게 유포 시킴으로써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반론을 펴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저질렀다고 비난받으면서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나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명예를 진지하고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논리 속에 내포되어 있다.<sup>68)</sup>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주권을 가장하여 자행한 폭력의 조직적 성격 때문에, 어느 진실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만이 ACHR 14조에서 구상한 구제조치를 처음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실위원회들은 법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및 법령 개정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 인정되는 인권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은 분명하다. ICCPR은 “현재 입법조치나 혹은 다른 조치를 이미 취하지 않은 곳에서는, 현행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들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나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협약의 당사국이 그 나라의 헌법절차와 현행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69)</sup> 이와 비슷하게 ACHR도 “미주협약 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의 행사가 법률이나 혹은 다른 규정에 의해 이미 보장되지 않고 있는 곳에서는, 당사국이 그 나라의 헌법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나 자유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sup>70)</sup> 고문반대 협약도 “당사국은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및 기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ICCPR 및 ACHR과 일치하고 있다.<sup>71)</sup> 게다가 이 협약은 각국이 “모든 고문행위를 그 나라의 형법상 범죄로 확정”하고<sup>72)</sup> “그 범죄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할”<sup>73)</sup> 의무를 지우고 있다. 끝으로, 이 협약은 두 위원회가 언명한 체계적인 정책과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협약은 당사국이 국가 기관원들을 위한 인권교육과 “심문규칙, 지시, 방법 및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를 촉진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74)</sup>

## 5. 결론

아메리카에서 가장 최근에 설치된 두 개의 진실위원회는 정의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들 위원회가 이행한 조사와 권고 기능은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진실의 터전 위에서, 효과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는 곳에서만 견고해질 수 있다—이들 세 가지 점은 신생

68) 칠레의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 보고서, 上記 각주 5, 840.

69) ICCPR, 上記 각주 54, 2조 2항.

70) ACHR, 上記 각주 57, 2조.

71) 고문반대 협약, 上記 각주 58, 2조 1항.

72) 同上 4조 1항.

73) 同上 4조 2항.

74) 각 당사국은 고문금지에 관한 정보와 교육이 법을 집행하는 민간인이나 군인, 의료인, 공무원 등, 체포 구금 투옥될 사람을 감금 심문 처리하는 일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충분히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문반대 협약, 上記 각주 58, 1조 1항.

同上 11조.

민주주의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모델이든 ‘진실위원회’ 모델이든 진실위원회를 통상적으로 활용할 논리를 요약하고 있다.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Final Report

Vol. 5 Chapter 8, Recommendations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 위원회 보고서 권고사항

### — 목 차 —

□ 화해와 통합을 위한 노력 .....	2
□ 서문 .....	2
□ 화해와 일치.....	3
□ 미래의 총체적인 인권침해 예방 .....	5
□ 문책 .....	6
□ 치유와 재활 .....	6
□ 보상과 재활 .....	8
□ 조직과 관리 및 운영.....	9
□ 교도소.....	10
□ 종교단체 .....	11
□ 기업.....	14
□ 법률과 사법 .....	17
□ 보안부대.....	22
□ 보건부문.....	27
□ 미디어.....	33
□ 보관중인 위원회 자료와 공개 .....	35
□ 문서의 파괴 .....	37
□ 해방운동 .....	38
□ 국제인권 .....	39
□ 결론 .....	40

## □ 화해와 통합을 위한 노력

화해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고 있는 위원회는 남아프리카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
- 관용과 이해의 정신으로 남아프리카 동포들에게 다가갈 것.
- 언어와 종교와 역사의 차이를 뛰어넘을 다리를 놓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할 것.
- 이행의 과정에서, 과거에 유난히 불이익을 받아왔던 집단, 특히 여자들과 어린이들의 어려움에 항상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
- 우리시대의 긴급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문화를 장려할 것
- 화해의 과정이 민중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종교, 기업, 노동, 예술, 정치 등 어느 분야이든 우리의 관심과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계획된 행동을 시작해 나갈 것.
- 인종차별 현실에 맞서서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
- 지역과 지방 및 중앙정부의 지도자들에게 화해와 일치에 대한 목표를 그들 각자의 행동지침에서 맨 윗자리에 놓도록 요청할 것.

이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우리는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화해에 관한 국가 수뇌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특별한 권고사항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의 대표자들이 화해를 추구하는 일에 최대한 참여케 할 것을 요구한다.

수뇌회의는 1999년 말엽에 열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프리카는 새 천년 전야에,

- 잊을 수 없는 갈등과 분열에 대한 기억을 되돌아보고
- 과거의 유산에 대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화해와 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를 건설할 것을 다시 한번 서약해야 한다.

## □ 서문

1. '국민의 일치와 화해 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Act)'(법)은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회)가 안정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의 창출에 관한 권고사항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제도적 행정적 법률적 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sup>75)</sup>

2. 이 법은 더 나아가 위원회가 국민의 일치와 화해를 촉진하거나 이루어 낼 목적을 가진 무슨 일에 대해서든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공약"이란 제목의 성명으로 이 장을 시작하는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화해의 목적은 여전히 달성하기 어렵지만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닐 만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신념이다. 보고서의 이 부분에는 위원회가 화해와 일치를 공동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 특별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이다.

3. 그 다음에, 위원회가 민주주의의 정착과 인권문화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특수한 영역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고사항들이 이어져 있다. 비록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장에 있는 모든 권고사항들을 전체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남아프리카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 및 어린이들과 관련되는 유별난 문제들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화해와 일치

4. 위원회에 대한 공통되는 비판은 위원회가 진실을 밝히는 데는 강했지만 화해에는 별로 기여를 하지 못했거나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5. 이 같은 독특한 비판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밝혀둘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진실이 반드시 화해로 발전되게 하자는 못하더라도 진실이 없으면 진정한 화해, 항구적인 화해가 있을 수 없다. 거짓말과 절반의 진실과 부인(否認)이 새로운 남아프리카를 건설할 바람직한 기초가 아님은 확실하다. 둘째, 제한된 기한과 재원을 가진 한 위원회가 수십 년 동안 억압과 갈등, 뿐리 깊은 분열의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 자력으로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남아프리카에서 화해와 일치가 실현되려면 모든 국민의 에너지와 혼신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위원회가 몇 개의 주춧돌을 놓는 데 조그마한 기여를 했겠지만, 건물을 완성하려면 모든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7.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위원들과 위원회 직원들은 남아프리카 전국을 여행했다. 청문회가 시골의 읍과 도시에서—작은 교회, 크고 위엄 있는 시청, 민간기구(NGO) 사무실, 교실, 읍 공회당, 치안판사의 법정 등에서 열렸다. 때로는 참석자가 매우 적어서 가까운 사람들만 슬픔과 추억에 잠긴 채 한데 모이기도 했다.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흘이 넘쳐나도록 꽉

75) 법 1조 3(1)(d)항 4(h)항.

메워졌다.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가장 많은 청중이 모여 청중수가 3,500명에 이르렀고, 비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부분 분위기가 엄숙하고 위엄이 있었다. 어떤 때는 분노의 기류가 감돌았다. 하지만 언제나 희생자들을 동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희생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

8. 무엇보다도, 위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했던 목소리에—소극적으로 아니라 적극적으로—귀를 기울이려고, 진실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위원회는 공포와 비애와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나서, 자유를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른 값비싼 희생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위원들은 인간들이 서로 손상을 주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거의 질려버렸다. 하지만 위원들은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손실과 비극의 짐을 졌던 사람들로부터 흔히 놀라운 관용의 정신이라고 결론짓는, 매우 용기 있는 이야기들도 경청했다. 그것은 종종 사람을 매우 겸허하게 해주는 체험이었다.
9. 위원회는 또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한 테러행위와 암살 및 고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는 가해자들의 얘기도 경청했다. 여기서도 분위기가 매우 다양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후회하는 말을 하고, 사면을 신청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용서를 구한 것이었다.
10. 이처럼 복잡한 대립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는 가장 파괴적인 과거의 유산 중 하나가 때때로 무고한 사람들을 '밀고자' 즉 협력자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라는 것을 흔히 알게 되었다. 이 같은 낙인을 찍힌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살해되고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국외로 추방되었다. 밀고자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도 여전히 매일같이 배척을 당하며 살고 있었다. 문제가 복잡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주장을 증명하거나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이른바 밀고자에 대한 박해가 화해의 과정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다.
11. 매우 다양하고 도발적인 긴 여정을 통해, 위원회는 남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시골사람, 도시사람, 흑인, 백인, 남자, 여자, 어린이들—모두가 결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든 억압과 저항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이가 치유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화해가 필요하다.
12. 이러한 체험과 결론은 화해가 위원회 단독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강화해 주었다. 위원회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지 않는 화해는 가치가 없고 깊이가 없으며 일축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라 전체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에 상처를 입혔다고 위원회에서 중언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경꾼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공범이라는 것과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 자신이 치유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했다.
13. 위원회가 남아프리카 동포들에게 화해와 일치를 위한 투신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이 같은 경청과 나눔과 스스로 화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 □ 미래의 총체적인 인권침해 예방

14. 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화해가 성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권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와 같은 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물들인 이 보고서와 공청회를 녹음하고 녹화한 테이프들은 국민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풍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매우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과거의 모습을 널리 알려줄 박물관을 설립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유리한 사람들과 불리한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교육개혁과 주택제공, 깨끗한 물 공급, 건강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시급히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한다. 사회 경제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복돋아 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정부가 고려해 주기를 위원회가 요청하는 두 가지는 평화봉사단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분명히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될 공공토목사업에 더욱 집중적인 역점을 두어 달라는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제정의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지 않고는 의미 있는 인권문화를 창출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이 단독으로 경제정의의 목표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남아프리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권리 및 기회를 주기 위한 기금을 특히 민간부문이 특별히 주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획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에서 한 진술 가운데는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다 동원하는 문제를 시급히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한다.

사회 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많은 불화와 분열의 밑바닥에는 인종차별주의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기관들이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구조와 문화 및 자세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문화의 확립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인은 중대한 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것이다. 사람과 재산의 안보가 기본적인 인권이다. 용납할 수 없이 높은 범죄 발생률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사항으로서 모든 지역에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남아프리카에서 인권문화를 창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또 하나의 장벽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 널리 퍼져있는 부정부패이다. 빈곤 및 범죄와의 전쟁에서 일반민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내려면, 또한 각급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비능률과 부패 및 그릇된 처리를 단호히 막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법치(法治)주의—국가의 명령이 시민의 권리를 무효화할 수 없음을 보장하는 원칙은 이제 헌법에 특별히 보장되어 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아무도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기소도 되지 않은 채 고문과 심한 학대를 받기 쉬운 분위기속에 감금할 수가 없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사태 하에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자행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시민의 배상요구에 대해, 경찰이나 다른 보안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률을 결코 다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전쟁으로 인간관계가 긴장되는 경우에도 —싸우는 명분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의미심장한 인권을 변함 없이 지켜야 한다.<sup>76)</sup>

## □ 문책

사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거부된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있는 사람이면 기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회가 갖고 있는 개인에 관한 심각한 소문에 대한 당국의 정보를 (사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특전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기간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사실이 밝혀진 남아프리카 경찰청 요원들을 기소하는 문제를 엄중히 유의해야 한다.

불처벌의 문화를 기피하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명분으로 일반 사면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 치유와 재활

15.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이 다같이 치유 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치유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희생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 비정부 단체(NGO)들이 있다. 이들을 격려해 줘야 하고 이들이 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혀 기술과 지식을 나누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해자들의 재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진료소와 적절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료소는 정신병 치료와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평가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들이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복귀와 재활

16. 국민의 일치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온갖 정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재활과 사회로의 복귀가 필요할 것임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76) ANC 죄수 및 구속자에 대한 잔혹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 Motsuenyane조사위원회의 보고서. 1993년 8월.

가해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그들이 학대했던 지역사회들이 포함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내거나 기술과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밀고자나 협조자로 비난받아 결과적으로 삶이 파괴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당과 사회단체 및 다른 관련 단체들은 가능하면 의식(儀式)이나 중재의 형식을 통해 공개적인 용서와 복귀의 과정을 용이하게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사회 속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정화(淨化)

17.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정화를 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화(신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정결례<淨潔禮>로서 깨끗하게 하거나, 빛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에는 그런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여 어떤 범주의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거나 공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른 국제위원회와 남아프리카 위원회도 이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예를 들면 Skweyiya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시는 잔학행위를 저지른 죄가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sup>77)</sup>

18. 국제법상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의견은, 정화의 대상이 되는 자리는 인권에 심대한 위험을 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민간 단체의 자리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 위원회는 남아프리카의 상황에서는 정화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정화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상업 출판물

20. 사실상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성명과 중언 및 전술을 바탕으로 기술했거나 기술할 작품들을 상업적 판매용으로 출판하는 사람들은 그 희생자들에게 보답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출판에서 나온 이익금의 일부를 ‘보상과 재활을 위한 대통령 기금’에 기부할 것을 권고한다.

## 인권문화 촉진

77) 과거 ANC 죄수 및 구속자들의 고소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Skweyiya 위원회, 1992년 8월.

21. 화해의 주춧돌인 인권문화의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는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 정부는 개방적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통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보호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것. 정부 부처들 내에 인권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와 독립적 감시인들, 특히 공중보호자(Public Protector)의 사무국 예산을 늘여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법률 집행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인권 교과과정을 정식 교육에 도입할 것. 이들 교과과정은 무엇보다도 인종차별주의와 성(性)차별, 갈등 해결 및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정부는 효율성과 조정력 및 비용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성, 인권위원회들을 하나의 인권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소망스러운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그런 기구가 개방과 책임의 원칙을 지키면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도록 적절한 재정지원과 설비를 갖추어 주도록 배려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회의 보고서가 인권교육을 위한 지극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는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문과 언어 집단에서 가능한 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녹음 테이프와 녹화 테이프도 활용해야 한다.

학자들과 언론인 및 연구기관들이, 과거의 갈등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동기와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을 정량(定量)분석해 보도록 권장해야 한다.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보다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와 현장에서의 솔선수범도 권장되어야 한다.

## □ 보상과 재활<sup>78)</sup>

### 22.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 a) 국가가 희생자들과 생존자, 그들의 가족, 공동체 및 일반국민에게 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생존자들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해주고,
- b) 생존자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며,
- c) 고통받은 사람들에 의해 가치관과 이의, 소망 및 권리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해주고,
- d)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와 국가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일에 참여할 국민의 도덕적 책임 의식을 높여줌으로써,

“진상규명” 단계의 가치를 더해 준다.

### 23.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78) 제 5권 제 5장 보상과 재활 정책 참조.

대통령의 집무실 내에 임기가 정해진 제한된 비서진으로 구성된 조직을 하나 만들어 보상과 재활정책에 대한 제안과 권고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비서진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활동을 통합하는 장기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많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 비서진은 다음과 같은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 ▽ 재정적 보상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일
- ▽ 해당부처에서 사망확인서 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
- ▽ 해당부처에서 무덤발굴과 매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일
- ▽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우 사망선고를 용이하게 하는 일
- ▽ 개인의 정치활동을 유죄로 만든 범죄기록의 말소를 용이하게 하는 일
- ▽ 신고된 폭력행위와 관련된 법적인 현안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일
- ▽ 개인이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 지역사회 시설물에 대한 개명(改名)을 용이하게 하는 일
- ▽ 과거사건들을 기념하는 기념비 및 기념물 건립과 박물관 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일

정부는 전국민 추도의 날을 선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기업체 및 일반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여러 부처와 시민단체가 우선순위에 둔 보상 및 배상사업의 재정을 지원할 신탁자금을 설립해야 한다.

## □ 조직과 관리 및 운영

### 24.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제도와 조화되는 새로운 인권문화를 만들고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기업체와 정부조직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변혁의 과정에 투신해야 한다. 위원회는 고용평등법에 들어있는 원칙들을 환영하면서, 정부와 기업과 노동계가 법이 공포되기 전에 그 규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차별수정정책(affirmative action)과 고용평등의 원칙은 변혁의 과정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사회의 모든 부문을 위한 경력관리(career development)와 전문기술 교육을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능률성의 근절과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치와 인권관행, 투명성, 책임성, 부패 및 기타 여러 형태의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는 문제 등을 진지하게 다룰 것을 보장해야 한다.

## □ 교도소

25. 우리의 모든 교도소에서 안전성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변혁을 촉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솔선하는 일을 특별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교정당국의 관료조직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이다. 비교적 폐쇄적인 교정업무의 제도적인 문화 역시 법률의 도덕적 법적 명령이 일상적인 관행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교도관의 권위와 심지어 교도소장의 권위마저도 교도소 관련 법률과 인권법 및 헌법에서 나오기보다는, 과거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발생시킨 뿌리깊은 문화와 교도소의 계급제도에서 사실상 나오는 경향이 있다.

### 교도소 직원에 대한 교육

2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교도관은 죄수들에 대한 처우와 교도소 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침이 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도소 직원들은 교도소 관련법과 그들의 의무와 책임, 윤리 및 갈등 해결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도소 직원들은 죄수들이 교도소 내에서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협력하도록 유도할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소자들의 건강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교도소 직원들은 옥중생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죄수들의 재활

2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죄수들을 위한 기술교육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해야 한다.

모든 재소자들에게 그들의 기본권리를 알려주고 그들이 선택한 언어로 된 헌법과 권리장전(權利章典)의 사본을 주어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법률 자문도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교도관들은 이와 관련하여 죄수들의 기본적 요구를 인정해 주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죄수들은 인권과 비폭력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죄수들이 조언(counselling)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죄수들이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과 기술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작업시간은 형벌로서의 고된 노동이 아니라 재활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보건 의료 서비스<sup>79)</sup>

79) 아래 보건부문에 관한 항목 참조.

28.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죄수들은 그들이 선택한 의사의 진료를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국제적인 기준

29.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교정업무 당국은 국제적인 기준의 형별개혁에 대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고 그 기준이 지켜지고 있음을 국민이 확인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독방감금 및 기타 형태의 격리수용, 음식물 제공 및 운동기회 차단, 그 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교도소에 감각기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C-Max로 알려진 최고의 보안시설을 갖춰놓은 것을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

### 국민의 의식과 감시

3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지역 및 국제 감시기구들이 남아프리카 및 다른 곳의 교도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형별개혁을 위한 전략을 권고해 주도록 권장해야 한다.

모든 교도소와 경찰서 유치장 및 기타 구치소들을 감시하기 위해 법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된 감시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교도소에 대한 언론보도 제한은 교도소 생활환경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31. 이러한 권고사항들을 실행하고 발전시켜나갈 책임과 그 실행상황을 감시할 책임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 있다.

a) 교정업무 당국

b) 보건부

c) 보건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

d) 교도소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e) 죄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 □ 종교단체

32. 종교단체들은 남아프리카에서 특권을 가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도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치유와 화해를 주도하는 일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치유

3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종교단체들은 국민들이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에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은 종파적 차원과 범종교적 및 이교(異教)단체 차원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지역과 지방 및 전국 규모로 거행되어야 한다.

종교단체들은 정신적 쇼크 진료소와 상담소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 기술과 재원의 재분배

3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종교단체들은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공동체들에 교육과 지도기술을 제공해 줘야 한다. 서로 다른 인종 및 계급집단에서 나온 종교단체들은 물질적 자원을 나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종교단체들은 '토지감사'를 실시하여,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을 (교회 소속 경작지 포함)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종교단체들이 인종차별정책의 법률에 의해 땅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땅을 진짜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종교단체는 그들이 지난 재원에 비례하여 조달되는 일반기금을 조성하여, 과거에 학대받은 희생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종교단체들은 정부와 협의하여, 국가건설을 위한 헌신의 일부로서 교육과 보건 및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화해

3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서로 다른 여러 종교집단들은 종교갈등을 배제하고 종교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으로서 서로 교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종교집단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사교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

법으로서,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들을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신앙공동체는 관용과 평화적인 공존의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를 초월하는 예배형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종교단체들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 공동체와 백인 공동체 출신 신자들을 서로 알게 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종교집단들은 다른 NGO들과 협의하여, 화해를 증진시킬 제도적인 포럼을 마련해야 한다. 곤궁한 공동체들을 돋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혜택을 덜 받는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한 평화봉사단 설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단체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다수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생활조건을 알려 주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나라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인종적 및 이념적 갈등을 고려하여, 평화봉사 단의 필수과목에 분쟁해결법과 평화유지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교단체들은 국민 사이에 화해와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줄 신학을 개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인종차별정책의 수혜자인 백인들이 재건 및 화해와 관련하여 해야 할 역할
- ▽ 흑인들과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희생자 신분'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을 되찾을 권한 부여
- ▽ 홀륭한 시민의 특성과 법치 및 사회의 '공동선'
- ▽ 여러 종교의 주요 믿음과 일치하는 세계적인 윤리적 기초를 명확하게 하는 일

### 국가와의 관계

36. 군종(軍宗)업무와 관련하여 최소한 몇몇 교회와 보안군 사이에 있었던 긴장관계를 상기하고, 다른 종교의 군종 성직자는 사실상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군종 성직자를 받아들이거나 임명하는 국가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신앙공동체와 만나야 한다.

- ▽ 특히 군대와 경찰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앙의 교의(教義)를 가르칠 성직자의 독립성
- ▽ 군종 성직자가 그들이 복무하는 기관과 그들이 속해 있는 종교 단체에 전통적으로 바쳐야 하는 이중 충성
- ▽ 특정 종교가 모든 종교는 제공받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법
- ▽ 종교집단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 ▽ 성직자가 그를 임명한 기관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의 창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성직자는 자기가 복무하는 국가기관의 제복을 입지 말아야 하고, 군이나 혹은 다른 기관의 계급장을 달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신학적 및 종교적인 인쇄물들은 종교단체 내부의 겸열을 통해 다른 종교를 경멸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그 인쇄물에 대한 책임을 신앙공동체가 지는 것을 보장할 필요성.

37.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 실행현황을 감시할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있다.

- a) 개인과 회중(會衆)을 포함한 신앙공동체와 감시 기관, 예를 들면 국회와 종교회의 등
- b) 남아프리카 국가 방위군(SANDF)
- c) 남아프리카 경찰(SAPS)

## □ 기업

38. 부자와 빈자 사이의 크고 폭넓은 격차는 격정스러운 과거의 유산이다. 이 격차는 민주화 과정에서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 이에 관해서는 기업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손해 배상

39.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인종격리정책(Apartheid), 예를 들면 인종차별과 성차별, 직업유보(job reservation), 집단지역법, 이동 노동제도, 낮은 임금, 부적절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사회보장혜택 등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을 위해 손해를 배상할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 ▽ 부유세

- ▽ 법인 및 개인의 수입에 대한 1회한(一回限) 일괄공제 과세(once-off levy)
- ▽ 요하네스버그 주식거래소에 등록된 모든 회사에 시가총액의 1%를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
- ▽ 기업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제안될 날짜까지 연장하여 소급 부과하는 방안
- ▽ 1990년 이후 고참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golden handshakes)에 대한 과징금 부과
- ▽ 과거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공동체에 기증하는 땅 및 기타 물질적인 기부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전(前)정부의 '증오스런 부채'에 대한 상환 책임문제는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은 국가 예산을 무력화시킬 부담이다. 이 돈은 재건과 개발은 물론 보상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무장관은 사스리아 기금(Sasria. 譯註: 인종차별정책 시대 후반에 정치적 불안으로 발생한 물질적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체가 기부하여 조성한 기금))을 보상과 재건 및 개발을 위한 자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 땅

40. 위원회는 권고한다.

실업계는 지방정부들과 함께 토지위원회와 협력,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94년 이전에 도용되거나 수용된 땅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땅을 잊은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도록 해야 한다.

## 특별기금

4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기업 화해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수임인(受任人)은 다른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데 사용될 재원을 정해진 목표에 따라 조성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기금은 과거에 특별히 겪은 고통의 에피소드나 혹은 특히 인종차별정책의 악영향과 관련된 기준에 의거하여, 특별한 기술교육이나 기업을 시작할 자본이 필요한 흑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기업관련 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해, 비상환 보조금과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금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존 사업들과 대체하거나 경쟁하려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을 증강시키려 해야 한다. 이 기금에는 작고 능률적인 관리팀이 있어야 하고, 운영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며, 공적 자원과 사적 자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인 기부자들과도 접촉해야 한다. 기업은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기법과 추진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 은행업

4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준비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 은행은 더 투명해져야 하고 연도별로 국회에 직접 보고를 함으로써 남아프리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은행업은 중소기업과 노동집약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조금 대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남아프리카의 개발은행은 과거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서, 재건 및 개발계획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토지 저당은행은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재분배하게 해줄 토지 개발을 우

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 차별 시정조치와 기술교육

##### 43. 위원회는 권고한다.

기업은 채용관행과 관련하여 잘 계획된 시정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교육과 조언(mentor-ing)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고용평등법에 들어 있는 원칙들을 지지한다.

#### 인종차별정책의 기타 사회경제적 유산

##### 44. 법이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위원회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기업의 손실과 수입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아니었다는 견해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그러한 손실이 막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그 불안했던 기간동안 기업을 잃었거나 다른 수입수단을 상실한 사람들, 특히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형태의 보상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불안 한 사태 때문에 모든 수입수단을 잃어버린 흑인 기업인들의 처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법정이나 다른 조직이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 경우,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기업부문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이른바 “남녀 독신자” 숙소는 앞으로도 남아프리카의 사회조직의 일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 대표자 위원회같은 것을 설치하여,

▽ 관련 건물의 상태와 수용할 인원수 및 제공되는 시설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숙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 숙소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 권고해야 한다.

#### 어린이들과 청소년

##### 4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적절한 입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어린이 노동을 근절시켜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적당한 주택과 교육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sup>80)</sup>

80) 위의 두 가지 권고사항은 주로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기업은 어린이의 권리와 보호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늘여야 한다.

과거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공동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및 전문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수단으로서, 전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자들의 봉급에 ‘졸업생 세금’(graduate tax)을 적절하게 부과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환경

##### 4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와 기업부문은 경제개발과 산업발전 및 농지확장 계획에 환경보호를 주요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이들 문제를 입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업은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한 내용을 주주들에게 내는 연례보고서나 혹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줘야 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실행하고 그 실행을 감시할 책임은 주로,

- a) 통상 산업부
- b) 재무부
- c) 노동부
- d) 환경부
- e) 사(私)기업 부문에 있다.

#### □ 법률과 사법

##### 47. 사법부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1994년 이후 법무부가 재판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

##### 48.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요원 및 NGO들과 정부가 제출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분석 검토했으며, 타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들 권고사항들은 간단한 것이며,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에만 눈을 돌리고 있을뿐이다.

#### 범죄의 희생자들이 사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 49. 범죄의 희생자들은 완전히 무시당해 법률적인 제도를 활용할 힘이 없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재판 제도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 ▽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전문 경찰관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립경찰청
- ▽ 범인 및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기소하여, 그들의 범죄가 탐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현재의 인식을 바꿔놓을 유죄판결을 보장할 수도 없는 기소제도
- ▽ 미결수와 죄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교정당국

#### 5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나라들에 조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희생자들의 이익을 적절히 배려할 것을 특별히 보장하기 위해 검사들의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이 행동규범은

- ▽ 희생자들에게 고소와 구제방법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
- ▽ 그들 개개인의 사건이 지난 장점과 결점에 관한 자문을 해주며,
-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희생자에게 재정적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300조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 ▽ 그들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며,
- ▽ 법정에 제출할 증거와 반대심문을 준비해주고, 검사들이 임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생자들을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사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51. 피고인들은 헌법상 법정 대리인을 내세울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법정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은 경찰과 형사재판제도가 용의자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법률구조단과 관선변호인 제도가 하는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적어도 법정 대리제의 최소한의 기준이 피고인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선 변호사 사무소가 국내 모든 주요 중심지에 설치되어야 한다.

법대 졸업생들이 하는 의무적인 사회봉사와 법률상담소의 학생실습규정이 관선변호인 제도를 보강하도록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관선변호인들을 법무부의 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되게 함으로써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석(保釋)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저지 되어야 한다.

보석기간 중에 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부당하게 허가할 당연한 우려는, 보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사정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기보다는 보석절차를 밟는 치안판 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불식(拂拭)시켜야 한다.

검사와 치안판사 및 법관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 조정과 감독

#### 52. 위원회는 권고한다.

법률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법학도들에게 학생실습규정에 따라 상담원자격을 주어 지방 치안판사의 법정에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 훈련

53. 정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초 및 기타 의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성격에서 법관들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관과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지지하게 해 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법원조직의 모든 직원들은 (서기에서 판사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유엔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새로운 남아프리카 헌법의 가치관과 국제법 및 그 기준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해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는 성별(性別)학대와 적절한 대응방법을 비롯하여 민감한 인권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교육과정에서도 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검사들과 치안판사들을 위한 교육은 법과대학과 지방 대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치안판사들을 위한 교육은 법관교육과 분리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법관교육은 법과대학이 아니라 법관들이 전문기관과 더불어 실시해야 한다. 헌법 및 인권 문제에 관한 교육을 이미 받은 법관들이 이 교육을 도와주어야 한다.

치안판사들은 국민의 이익과 피고인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의 맥락에서 새로운 보석 절차를 적용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4. 남아프리카 법률전문직업의 발전은 법조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어떻게 진입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된다. 예를 들면, 법과대학 상급생들을 법정 대리인이 없는 피고의 관선 변호인으로 활용함으로써 졸업생들이 적절한 실무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법과대학은 모든 남아프리카인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교과를 재검토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늘리고 의무적인 사회봉사를 졸업조건으로 도입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과 대학생들에게 인권법을 더 많이 이해하도록 해주고 더욱 강도 높은 법윤리학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치안판사위원회는 변호사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주로 기소영역에 대한 교육을 받는 치안판사들에 의해 더 이상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경찰관들에게 교육과 윤리실천지침을 통해, 민주국가에서 인권문화에 따라 봉사하는 기풍을 고취해야 한다.

수사관들에게 적절한 법의학적 수사기법을 가르쳐줌으로써, 구속상태에서 폭력을 통해 불법 적이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끌어내는 현재의 관행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형사 아카데미의 역할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확대해야 한다.

법정 통역관의 교육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고등전문학교는 (무엇보다도 실용언어학과와 법학부를 포함하여) 여러 전문분야로 이루어진 대학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훨씬 더 능숙한 법정 통역관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봉급은 능력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가 보조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법률가 보조원 협회가 보증 해 줘야 한다. 일단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보석 신청이나 환송 같은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하급법원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하며, 교도소를 방문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법률가 보조원들은 제안된 '법률 구조단'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기소업무전문팀을 구성하여 택시 폭력, 마약 거래, 자동차 도둑, 범죄조직, 정치 폭력 등과 같은 고질적 중대범죄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이 팀은 '독립민원조사위원회'(Independent Complaints Directorate)와 비슷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특별조사팀, 예를 들면 KwaZulu-Natal의 특별수사대의 과업은 수사결과를 기소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증인 보호

#### 고소인 보호

55. 많은 경우에 희생자들은 그들이 결부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고발하기를 꺼려한다. 현재의 증인 보호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선뜻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 보호

56. 정치적인 동기로 자행한 인권침해가 폭로된 것은 가해자들이 나서서 그들의 조직이 한 활동을 "밀고"했을 때뿐이었다. 마찬가지로 조직범죄가 척결되려면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포괄적인 증인보호를 확신할 때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청소년 범죄자

57. 남아프리카 법정에 출두하는 청소년 피고인 숫자가 매일같이 늘어 나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보호관찰제도를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적절한 형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재판을 기다리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청소년의 친척들 중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실습규정을 도입하기 전이라도, 법학도들이 법정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판선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 대표성

58.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고등법원 판사진의 인종 및 성비(性比)의 불균형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법관으로 임명되고 싶어하는 흑인 및 여성 변호사나 대학생들을 위한 단기 법관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더 많은 변호사들을 끌어들여 판사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안판사들의 성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현직 치안판사들이 대부분 국가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재야(在野)에서 치안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 추장들의 법정

59. 남아프리카에서는 민간의 법적인 문제 중 많은 부분이 공식적인 법정 밖에서, 즉 과거 흑인 자치지역(homeland)의 추장들이 주관하는 재판에서 식민지 시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법무부는 전통적인 일을 맡아보는 지방장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법정과 그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은 형사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지역에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체형(體刑) 및 기타 불법적인 제재를 일상적으로 가해왔다. 이런 관행은 시급히 종식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런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한다.

이런 법정이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와 비롯하여 헌법에서 정해 놓은 권리들을 존중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에 관한 규칙들을 비롯한 관행 법규를 지켜야 한다.

## 비공식 재판

60. 비공식 재판, 즉 “인민 재판”이 특히 1980년대에 많은 읍구(邑區)에서 열렸다. 부분적으로는 국가 재판제도의 뻔한 불법성에 대응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인민재판은 억압적이었고 자연적 정의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법칙을 지키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단속체제가 자연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체제로 전환하려는 정후가 농후하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61.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고 발전시켜나갈 책임과 그 실행과정을 감시할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있다.

- a) 법무부
- b) 안전·보안부
- c) 남아프리카 법률협회
- d) 고등 전문교육기관
- e) 법률관련 NGO
- f)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기구

## □ 보안부대

### 정보기관

62. 위원회는 과거 국가 정보기관의 기록서고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독립된 연구자들이 보안부대 소속 모든 사단의 정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범위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분석이 완료되면, 1996년의 남아프리카 국립문서보관소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라 문서를 국립기록보존소에 이관해야 한다.

이들 연구자들은 그들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업무의 모든 비용은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각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장관들은 또한 모든 정보수집 활동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은 용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 정보조정위원회 (NICOC)는 모든 정보를 보안부대의 각 사단이 공개적으로 철저히 공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안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범(教範)을 재검토, 새 헌법에 맞도록 바꾸어야 한다.

## 남아프리카 국가 방위군

63. 남아프리카 군대(SADF)의 비밀주의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한 작전과 계획의 기초가 되었음이 SADF의 활동에 관한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무임소장관은 물론 국방장관의 특별한 허가 없이 SADF요원에 게 어떠한 비밀작전에도 참여할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비밀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다른 비용과 똑같은 감사 를 받아야 한다.

‘사법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Coast Project(譯註: 生化學 무기 개발계획)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 남아프리카 밖에서 구입된 마약은 물론, 생화학전(CBW)계획과 관련된 회사가 생산한 마약을 없애버렸는가. 그 약물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말았는가.
- ▽ Project Coast 관련 회사의 이사들이 국가의 자금을 사용한 부정한 활동에 가담했는가.
- ▽ CBW계획과 관련되는 정보가 현재 Pretoria(譯註: 남아공 행정수도)의 금고 속에 있는 광(光) 디스크에 복사되어 있는가. 인가 받지 않은 이들 디스크의 복사판이 존재하는가.
- ▽ 위원회나 혹은 바손 박사(Dr. Basson. 譯註: Project Coast 담당 생화학자. 만델라 암살기도 관리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있는가.

아직도 존재하는 CBW계획의 모든 잔재는 제거되어야 하고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중조작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에 대한 연구와 제조는 중지되어야 한다.

군대의 재정적 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국가방위군(SANDF)은 작전을 위해 이름뿐인 회사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64. 방위백서에서 제안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보안부대 요원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일반민중에게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켜 주기 위한 긍정적인 발상이다. 위원회는 이 계획을 엄중히 실천해 주기를 권고한다.

65.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거나 혹은 어떤 범죄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진 보안부대 요원들을 재판제도를 통해 단호하게 처리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66. 위원회는 과거 남아공 군대(SADF)가 아직도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어 SADF의 문

서보관소에 접근하려 노력했으나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위원회가 겨우 확보한 일부 문서도 SADF 핵심간부가 통제하고 선별하고 검열했다. 문서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 문제는 이 보고서의 다른 곳에서도 자세히 언급했으며, SADF의 활동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 때문에 불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SADF가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과는 반대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 67.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독립된 연구가들이 SADF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의 범위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군사 정보 문서보관소에 있는 이들 문서들을 문서보관소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 문서보관소로 이관 해야 한다.

#### 경찰활동

68. 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의 상당한 부분이 경찰청(SAPS) 요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권고사항은 위원회가 과거에 남아공 경찰(SAP)이 한 역할에 대해 알게 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SAPS를 개혁하고 경찰업무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문, 강제자백, 구류 중 사망, 기타 인권침해 행위가 아직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 199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서나 치안활동의 결과로 숨진 사람이 370여 명이라고 보고되었다. SAPS의 내부 개혁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 작업에는 적절하고 공정한 감시와 마땅한 문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 지방 경찰청

##### 69. 그래서 위원회는 권고한다.

지방정부가 지방경찰청에 대해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 독립 민원조사 위원회

##### 7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독립 민원조사 위원회(Independent Complaints Directorate)는 일반경찰관련 법률과 독립된 새로운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ICD는 안전보안부와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ICD는 경찰청과 다른 기관들이 ICD의 압수 수색권을 포함한 수사활동과 관련되는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ICD는 경찰청에 관련 경찰관의 태만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ICD의 권고사항에 따라 징계나 사법처리를 하도록 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경찰청 내부의 부패를 조사할 임무를 경찰청 내 한 부서에 맡기지 말고 ICD에 맡겨야 한다.

ICD는 민원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치안정책과 관행에 대한 색출조사 및 평가를 할 자격과 재원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치안 업무

71. 군중을 통제하면서 보안부대가 사용한 부당한 무력행사가, 위원회에 보고된 사상(死傷)사건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경찰관들은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중의 치안에 관한 교육수준은 앞으로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개선된 교육이 군중과 집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갖도록 할 것이며, 결국 무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줄어들 것임에 틀림없다.

치안유지 업무는 지방분권화 되어야 하고 (새로운 정책에서 규정된 대로) 정상적인 경찰청 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앞으로 경찰 기능을 중앙집권화하고 군사화 하는 경향은 피해야 한다.

집회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집회규제법 규정에 대한 공공교육 (및 지방당국에 대한 교육)은 특히 선거와 공휴일 및 기타 정기적 공적 행사에 대비하여 계속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집회규제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소해야 한다.

경찰은 지방경찰서 차원에서는 물론 경찰청이나 혹은 안전보안부에 검열관을 두어, 새로운 국가규범의 준수상황을 점검케 하고 특별한 사건에 대한 단속상황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안전과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와 의복을 지급해야 한다—경관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무력을 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덜하게 된다.

경찰청은 무기와 탄약의 저장과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무력을 사용한 모든 경우에 사후조사가 기본절차가 되어야 한다.

경찰청은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배치된 모든 사건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팀을 만들고 장비를 갖춰주고 훈련시켜야 한다. 이것은 경찰관들 자체의 결과보고와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향상시키기는 데 유용한 방책이 될 것이다.

군중 속에서의 무기휴대에 관한 법규는 언제나 매우 엄격해야 한다.

집회를 단속한 과거의 남아프리카 경찰과 흑인자치정부 경찰의 나쁜 관행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가 교육에 활용되어야 한다.

#### 범죄에 연루된 경찰

72. 중대한 범죄가 경찰의 묵인 하에 자행되었다고 알려진 경우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관련 지역 밖에 있는 경찰관들은 불러들여 조사해야 한다.

권한을 남용한 경찰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사태 중이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불법활동에 참여한 경찰에 대한 면책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무장관은 경찰이 감금하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문하고 죽인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혐의자나 감금중인 사람을 심문하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계속 비난 받아온 경찰관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될 수 있는 자체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모집 및 교육

73. 위원회는 권고한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박식하며 전문적인 후보자들이 경찰에 응모하게 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독려하는 채용관행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전문적 기술과 동기부여를 향상시켜야 하고, 부패하기 쉽거나 불법적인 관행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다 나은 후보자들이 응모하여 경찰에 남아 있도록 부추기기 위해 봉급문제에 즉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윤리적 행동지침의 도입과 교육을 통해, 모든 경찰관들에게 민주국가의 인권문화 속에서 봉사하는 기풍을 주입시켜야 한다.

수사관들에게 적절한 법의학적 수사기법을 가르쳐줌으로써, 혐박과 폭력 및 다른 불법적이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끌어내는 현재의 관행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수사 아카데미의 역할을 가능한 한 빨리 확대해야 한다.

## 경찰청과 교정국

74. 경찰청과 교정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제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두 부서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고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교정국의 재량에 따라 가석방되고 있다.

75. 위원회는 권고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석방은 그들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76. 위원회는 덧붙여 권고한다.

▽ 그 죄수가 석방되어 나갈 환경에 대한 조사를 사회 사업가(social worker)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그 죄수가 생계수단을 가지고도록 보장해야 한다.

▽ 재활기록을 완벽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죄수들을 교육시켜 교도소 밖에서 생활할 채비를 갖추도록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한다.

▽ 교정국은 그 죄수가 과거에 석방조건 중 어느 절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수사관과 치안판사 및 교도관은 석방될 죄수의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

## 보안회사

77. 위원회는 권고한다.

국회의 관련위원회는 보안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업전반의 윤리강령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안산업의 현황을 검열하고 조사 해야 한다.

## 총기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78. 조사대상 기간이 끝난 후에 많은 사상자(死傷者)를 낸 사건들은 물론 위원회에 보고된 많은 사상사건들이 총기에 의해 저질러진 사실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권고한다.

총기에 대한 소유와 사용에 대한 현재의 통제 방법은 폭넓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 □ 보건 부문

79. 남아프리카의 수백만 국민이 조사대상 기간 중에 마땅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보건의료진들은 고의적인 행동이나 실수로, 또는 무지로, 혹은 독자적인 진료권 행사를 두려워 하거나 못함으로써, 많은 개인이나 집단을 더욱 학대하게 되었다. 보건의료 제공체계, 관리, 감시 및 담당 기구, 보건 전문인 교육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입법

80. 위원회는 권고한다.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입법은 1차 보건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보건의료 법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제정될 법률은 투명성, 평가 및 감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밀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 직업 윤리규범

### 8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보건 전문인을 위한 일률적인 윤리규범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모든 보건 학부에서 가르쳐야 한다.

법정위원회(statutory councils)는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보건 전문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규범을 숙지하도록 해줘야 한다. 보건 전문인들은 이들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보건 전문인들은 윤리 및 인권 딜레마를 의논하기 용이한 소그룹의 정기 회합을 통해 그들의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해야 한다.

## 교육

### 8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보건학부는 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늘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학 프로그램(bridging program), 재정 지원, 개인 지도교수, 조언(mentoring)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보건 전문인을 위한 모든 교과과정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목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지식, 기술, 자세, 윤리학 연구와 같은 인권관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의사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될 (국내 및 국제적) 규범들에 대한 지식과 숙달 및 약 한다.

준수능력이 자격증 취득과 등록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 건강의료에 대한 서약의 내용과 그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윤리적 원칙을 대학교육에서 맨 먼저 기회가 닿는 대로 가르쳐 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받아들인 원칙을 쉽게 소화하게 하고, 교육기간 중에 연구하며 실행할 기회를 주게 된다.

의학교육 프로그램에는 인권과 윤리문제에 대한 검토가 계속 포함되어야 한다.

## 취약한 보건 전문인 보호

### 83. 양쪽에 충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하는 보건 전문인들이 인권침해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제도적인 보건의료와 인권에 관해 현재 하고 있는 적절한 교육은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 전문인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비(非)의료인 교도소 직원, SANDF 요원 및 경찰에게도 거기서 일하고 있는 보건 전문인들의 의무와 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해 주게 될 것이다.

인권을 지지하는 규범과 기준이 제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그 준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보건의료, 군대의 보건의료, 국립 영안실 및 법의학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법적으로 또한 실제로 책임지고 있다. (법의학 서비스를 책임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죄수들과 구속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없다.) 달리 말하면, 이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 전문인들은 법무부에 의해 채용되어 법무부에 보고하고 전문적인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 교도소의 보건의료 서비스

### 8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교도소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죄수들과 구속자들을 위한 보건의료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 및 의무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모든 경찰과 교도소 직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건부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지방 의사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거에 인권침해 행위에 참여했거나 공모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구속자들과 죄수들을 치료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주의 사항: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다. 다만 그들을 공모하기 쉬운 자리에서 퇴출시키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죄수들과 구속자들의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은 보건 전문인이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의료인이 아닌 교도소직원이나 경찰이 그 기록에 접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죄수들과 구속자들에 대한 진찰은 환자나 보건 전문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비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교도소와 기타 감금장소, 군사시설 및 정신병환자들을 위한 기관 등의 보건의료에 대한 독립적인 검열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윤리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지방 의사들과 기타 교도소 보건의료인을 자문하고 지도하고 지원할 권위 있는 독립된 방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교도소 보건의료진을 위한 필수 재교육과정은 윤리, 정신 건강문제, 인권, 죄수들에게 필요한 독특한 보건위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죄수들과 구속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보건 전문인들이 작성하는 서류 양식에는 고문이나 학대에 대한 주장과 그 학대의 증거 및 그런 주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방법 등을 적는 부분이 특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학대에 관한 사항은 모두 독립된 감시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아야 한다.

## 법의학 서비스

### 8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검시(檢屍)나 기타 법의학적인 검사를 하는 모든 요원들을 위한 일률적인 교육기준이 있어야 한다.

야 한다.

보호관리와 법의학 서비스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해가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수들과 기타 구금자나 구속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들은 법의학적 책임을 지면 안 된다.

법정신의학을 통제하는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 법정신의학과 관련되는 비밀주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법정신의학 서비스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는 구금 중에 죽는 사람의 가족이 이용하는 독자적인 법의학 서비스의 비용을 대주어야 한다. 가족들에게는 검시에 독자적인 법의학 병리학자를 참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 영안실과 법의학 병리 실험실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 영안실과 법의학 실험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영안실에 X-ray 시설이 없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했다.

## 정신 건강

### 8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신건강은 국가의 관심사로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1차 보건의료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모든 남아프리카인, 특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초점이 거의 배타적으로 진료하는 1 대 1 요법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의료 요법, 특히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치료법을 찾아내고 시행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상담자들과 가족들이 의료 제공에 관여해야 한다. 서비스 사용자들도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

정신병환자들을 위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과 형태는 독립된 기구가 감시해야 한다.

모든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신측정 테스트를 개발하여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남아프리카의 주변 상황에 적절한 쇼크 상담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 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는 모든 해당 부서, 예를 들면 주택, 교도행정, 교육, 안전 및 보위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 과정에 고려해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발전시켜나갈 소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폭행을 당한 쇼크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폭넓게 공유되어야 하고 사회 환경에 실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관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PTSD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장려해야 한다.

## 의료 전문인 조직

### 8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보건 전문인들을 통제하는 법정위원회(Statutory Councils)는 인권증진에 앞장서야 한다.

법정위원회는 공식적인 민원 제기에 의존하지 않고 비윤리적/비전문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조사할 자격을 가져야 한다.

법정위원회의 구성은 성(性)과 인종 측면에서 사회를 대표해야 하고, 지역사회 대표들과 다른 직업인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실패했던 자율규제 제도가 영구화되지 않게 보장할 것이다. 위원 임명 과정은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투명해야 한다.

법정위원회의 징계 “부서”는 그 구성원들이 핵심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징계조직과 제재를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는 기구이라야 하며, 전체 위원회는 징계조사의 결과와 부과된 제재를 재검토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법정위원회의 정치적 기능적 자주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정위원회는 법률이나 정책이 환자나 고객 혹은 보건의료 전문인들의 권리이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권침해 행위를 반대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건의료 전문인들을 법정위원회와 전문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 국영 기구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

### 88.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보건의료 전문인들과 인권 전문가, 소비자 대표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보건 및 인권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인권위원회 안에 적절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정부와 전문인 단체 및 법정위원회와 독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분명히 이들과 협력하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 ▽ 위원회의 이 보고서에 따라 의회가 채택한 보건부문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일.
- ▽ 제도적인 보건의료를 감시하는 일.
- ▽ 보건 및 인권교육의 교과과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일.
- ▽ 보건 직종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보고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
- ▽ “정부의 의료보호자”, 즉 시민 권리옹호자(ombudsperson)의 직책을 만들고 그 일을 감독하는 일.
- ▽ 군 복무중인 보건의료인의 법적 윤리적 직업적 지위를 조사하고, 군 관련 법률과 직업 윤리 사이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분명한 지침을 개발하는 일.

이 기구는 보건 전문인들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비밀리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